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918호
-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찬성자 12명)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15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및 그 직전에 일본제국주의에 부여한 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들의 조사·연구·홍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함.
- 동 조례안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기를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관계법령으로 발의되었음.
- ‘친일반민족행위’란 동법 제2조1)에 따라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국회의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생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 제7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만, 의원요구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조례제정과 함께 안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임.

- 동 제정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연구·홍보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후세에 이를 교훈으로 남겨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일제에서 해방된지 76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친일문제의 역사적 해악을 객관화함으로써 반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정의와 상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을 세운다는 대승적 시각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1823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2020.8.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안됨 ○ 조례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추진경과	○ 2020.8.12. 조례안 발의(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정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본부 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존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p>[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단체) 활용 및 보조금 지급 규정 등 명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5조 및 제6조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마련과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규정 미비로 실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필요 		

<p>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p>	<p>[위원회 설치 규정안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7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문화본부 내에는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역사도시서울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문화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시사편찬위원회)에 따라 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p>[종합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본부 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존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p>대응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검토내용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방문 설명 				
<p>상 임 위 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p>담당부서</p>	<p>역사문화재과</p>	<p>팀장</p>	<p>김지혜(☎2133-2612)</p>	<p>담당</p>	<p>전소영(☎2133-2613)</p>